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내] 불법음란 합성물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

-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2362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유포 등) 예방을 위해 불임과 같이 예방·홍보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 이에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학급 게시판 게시, 학부모 알리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카드뉴스 5종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국립초중고특수학교장

주무관

학생생활교육담당

민주시민교육과장

협조자

시행 민주시민교육과-11861 (2024. 7. 25.) 접수 한솔초등학교-8177 (2024.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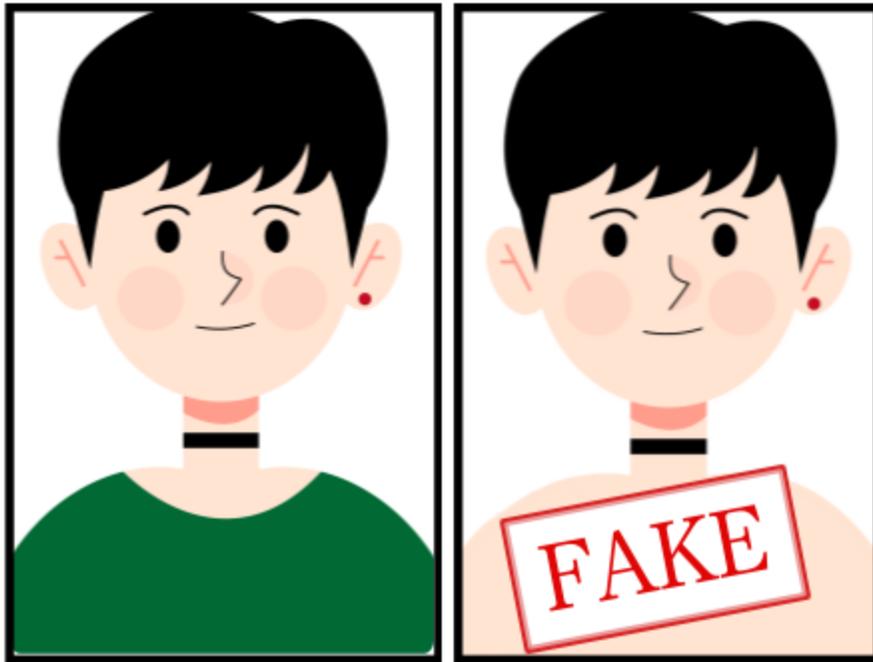
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효자동2가, / <https://www.jbe.go.kr>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화 063-239-3470 /전송 063-220-9413 /mir1597@naver.com /공개



잠깐!

불법음란합성물이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 또는 영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것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 행위
모두 강력 처벌 받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작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금전 취득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범행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실제 피해 처벌 사례



친구들과 선생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유포**

"타인의 성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작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형사처벌**)
- 학교 **강제 전학** 조치

강력하게 처벌 받는 디지털성범죄 입니다.

재미로 만든 건데 죄가 되나요?



친구가 보여줘서 본거예요!

피해를 당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장난삼아 만든 **합성물**

피해자는 평생 **상처**





피해 신고는?

범죄 신고



긴급 전화 : 112



성폭력 상담



전주성폭력상담소
063)717-1366